□ cost4 생활문화창작소

○ 대관료 감면기준

연번	감면대상자	감면비율	비고
1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		
2	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(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)	100%	
3	[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에 따른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		
4	국민기초생활수급자		
5	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(1급~3급)		
6	생활문화 동호회		
7	차상위계층		
8	사회복지시설 수용자	50%	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
9	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		
10	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(4급~6급)		
11	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인 여성		
12	경로우대 대상자		
13	[다문화가족지원법]에 따른 다문화가족		
14	[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	
15	화성시 거주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	30%	
16	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	
17	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	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	

[%]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, 단체,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.